

민법 기본과목 강좌구성 소개와 민법의 기본원리

I. 민법 기본과목 강좌구성

1. 민법의 개념 및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1) 민법이란 시민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질서 또는 시민들의 권리·의무에 관한 법으로서 사인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가장 중요한 법이다.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민법」이라는 명칭을 가진 법률을 말하며,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형식에 상관없이 사적 법률관계에 대한 법규정을 총칭하는 개념으로서 「민법」은 물론이고 「부동산등기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은 특별법들이 포함된다.

(2) 민법은 사인간의 법률관계를 주된 규율대상으로 하는데, 법률관계는 개별 당사자간의 법적인 관계로서 권리·의무를 그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점에서 민법을 개인의 권리·의무의 총체라고도 할 수 있다. (민법 제750조)

2. 민법전의 구성

민법은 총칙, 물건, 채권, 친족·상속의 5개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법은 재산법 분야의 물건편과 채권편, 그리고 가족법분야의 친족편과 상속편으로 대별될 수 있으며, 총칙편은 양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통칙적 성질을 가진다. 그러나 총칙편의 경우 가족법분야에서는 많은 예외규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질상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주로 재산법분야에서의 통칙으로서의 의미가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1) 총칙편

총칙편에서는 먼저 민법의 법원(法源)(제1조)과 신의성실의 원칙(제2조)을 규율한 통칙을 둔 뒤, 법률행위의 주체인 인(자연인과 법인), 법률행위의 객체인 물건, 그리고 법률행위의 총칙과 의사표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어서 타인을 통한 법률행위의 형태인 대리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법률행위의 효력과 관련된 무효·취소와 조건과 기한 및 기간, 그리고 소멸시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2) 물건편

물건편에서는 물건의 종류와 물건의 변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 물건의 종류로서 점유

권, 소유권, 용익물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 그리고 담보물권(유치권·질권·저당권)의 순서로 규정되어 있다.

(3) 채권편

채권편은 채권자와 채무자라는 특정인 사이의 특별한 법적 결합관계인 채권관계를 규율하는데, 채권의 목적이나 효력, 다수당사자 채권관계, 채권의 양도·채무인수, 채권의 소멸에 관한 총칙규정에 이어, 계약에 관한 규율을 하고 있다. 계약은 다시 계약의 성립, 효력, 해제·해지에 관한 총칙내용을 먼저 두고 계약유형별로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법정채권관계인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다.

(4) 친족편

친족편은 친족신분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면서 먼저 총칙편을 둔 후 가족, 약혼과 혼인, 부모와 자, 후견, 친족회, 부양, 호주승계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친족관계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로부터 전개되는 것으로서 부부와 친자를 중심으로 한 친족신분에 관련된 문제를 담고 있다.

(5) 상속편

상속은 사람의 사망이라는 사건에 의한 상속의 개시를 중심으로 한 제도이므로 상속편에서는 유산의 분배가 중심문제가 된다. 상속편에서는 법률에 정한 상속순위에 의한 상속에 이어 유언에 관한 내용이 유류분제도가 함께 규율되고 있다. 상속편은 법률규정이나 생전(生前)의 유언을 통해 사망자의 재산이 이전된다는 점에서 재산법과 유기적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3. 개인의 재산적 생활관계과 민법전 재산관계의 규율 개관 : 계약, 책임, 재산

(1) 자율적 의사에 따른 법률관계

단독행위

계 약 ex. 갑 ----- 을
→ 소유권이전 / 매매대금 ←

계약의 성립 - 성립의 모습.방법 (제527조 이하)

의사표시의 내용요소 (제4조, 제103조, 제107조 이하)

계약의 내용과 효력

계약의 내용 - (매매)계약의 목적물 (→ 급부의 목적)
이행방법(제374조, 제375조, 제460조 등)
이행장소(제467조)
금전의 지급 (제375조, 제469조 이하)
cf. 금전지급의무의 발생원인

계약의 효력 - 동시이행 (제536조), 위험부담 (제537조)

계약의 소멸

정상적 소멸 - 변제 (제460조 이하) * 엄밀한 의미
매매계약의 경우 제186조, 제188조
의사합치에 의한 계약해소 : ex. 해약금 (제565조)
법률규정에 따른 계약해소 : 제543조 이하

(2)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 및 법률에 따른 의무부담 관계 등

계약상의 의무불이행 (이원적 체계)

채무불이행 책임 (제390조, 제544조.제546조)

제389조, 제390조, 제544조

담보책임 (제570조 이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제750조 이하)

부당이득과 사무관리 (제741조, 제734조)

(3) 물건에 대한 지배와 담보제도

ex. 갑 ----- → 을 (제186조, 제188조)

cf. 법률관계의 상대적 관계와 절대적 관계

소유권 제도

취득원인 : 의사에 의한 취득 - 제186조, 제188조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 - 제245조, 제249조

범위와 효력 : 제211조, 제213조 이하, 상린관계

특수모습 : 공동소유

물건의 용익적 이용제도

채권적.상대적 제도 : 임대차(제618조 이하)등 대차계약

물권적.배타적 제도

지상권 (제279조),지역권(제291조),전세권(제303조)

물건의 담보적 이용제도

저당권 (제356조), 질권 (제329조), 유치권 (제320조)

cf. 점유제도 (제192조) : ex. 취득시효

채권담보제도

물건을 이용한 담보제도

사람을 이용한 담보제도 : 보증채무, 연대채무

채무자의 책임재산 확보를 위한 제도 :

채권자대위권 (제404조), 채권자취소권 (제406조)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4. 민법 기본강좌의 구성체계 소개

민법 1 학습내용 (계약법 1 : 계약총설과 법률행위)

제1강 강의개요 및 계약법 총설

제2강 법률행위 총설

제3강 계약의 성립

제4강 계약의 내용

제5강 계약의 효력

제6강 변제에 기한 채권의 소멸

제7강 그 밖의 사유에 기한 채권의 소멸 (소멸시효 포함)

제8강 법률행위의 무효원인 1

제9강 법률행위의 무효원인 2

제10강 무효에 따른 법률관계

제11강 대리인 법률관계 (제3자를 위한 계약 포함)

제12강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

민법 2 학습내용 (계약법 2 : 개별 계약과 계약책임)

제1강 매매 등 재산권이전형 계약

제2강 물건용익에 관한 제도

제3강 채권적 대차형 계약

제4강 물권적 용익제도 (법정지상권 포함)

제5강 노무공급형 계약

제6강 계약책임 (1): 채권관계의 효력 / 계약이행상의 장애 일반

제7강 계약책임 (2) : 강제이행

제8강 계약책임 (3) : 계약이행의 장애에 따른 효력

제9강 법인

민법 3 강의내용 (물건의 소유와 물적 담보제도)

제1강 강의구성과 물권법 총설

제2강 물권지배의 공시수단 : 등기제도

제3강 물건지배의 기본제도 1 : 점유제도

제4강 물건지배의 기본제도 2 : 소유제도(1)

제5강 물건지배의 기본제도 3 : 소유제도(2)

제6강 채권담보제도 개관 및 저당권 (1)

제7강 저당권 (2) (전세권저당권 포함)

제8강 유치권과 질권

제9강 비전형 담보제도

민법 4 학습내용 (법정채권관계와 채권의 확보·이용)

제1강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 요건과 특별한 책임요건

제2강 공동불법행위와 불법행위법 현대적 문제 (1)

제3강 불법행위법 현대적 문제 (2)

제4강 불법행위책임의 효과

제5강 사무관리

제6강 부당이득

제7강 인적 담보제도 (다수당사자 채권관계)

제8강 책임재산 보전제도

제9강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II. 민법 재산편의 기본개념 : 채권과 물권, 의무부담행위와 처분행위

1. 채권과 물권의 예시상황

○ 매매계약에 따라 매도인과 매수인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부담하는 의무

○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매수인에게 동산을 인도해 줌으로써 매매목적 물에 대한 소유권을 매수인이 취득하는 상태

2. 물권의 개념과 특징

민법상 재산권 중 가장 중요한 권리로는 채권과 물권을 들 수 있다. 이점은 민법전이 물권과 채권으로 나누어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물권이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지배권의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소유권과 점유권,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담보물권(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물권은 권리자의 물건에 대한 직접적 지배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지배와 상치되는 지배는 인정되지 않는 배타성을 가지며, 물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특정한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권 내지 대세권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물권의 특성은 물권이 다른 권리(특히, 채권)에 비하여 강력한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으로 정해지며(물권법정주의, 제185조), 물권의 변동을 위해서는 등기나 물건의 인도와 같은 공시방법(공시의 원칙, 제186조·제188조 1항)이 요구되며, 물권의 절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된다.

3. 채권의 개념과 특징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채권은 채권관계로부터 발생하게 되는데, 당사자 간의 계약이나 법률의 규정(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리고 채권은 채무자의 어떠한 행위를 그 내용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물건의 인도·운송·보관, 물건의 사용, 노무의 제공과 같은 채무자의 적극적인 행위가 필요한 경우(작위채무)와 건축금지약정이나 경업금지약정과 같이 채무자의 소극적 행위(부작위채무)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인 채권을 의무의 주체인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권 내지 대인권이라고도 한다. 물권과 달리 채권은 타인이나 타인의 행위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한 바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거나 법률규정에 따른 일정한 이익을 청구하는 권리라는 점에 특색이 있다. 이와 같이 채권은 지배권이 아니므로 또한 배타성도 가지지 않는다. 즉, 물권의 경우에는 배타성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내용을 가지는 물권이 여러 개 일수 없지만, 채권의 경우에는 이와 달리 동일한 내용 내지 목적을 가지는 채권이 다수 존재할 수 있다.

4. 채권과 물권의 효력 대비

(가) 매도인 (A)과 매수인 (B)사이 X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만)을 맺은 상태

- X 동산의 인도를 위한 B의 A에 대한 권리 (A와 B 사이의 상대적 권리)
- A가 그 물건 X를 제3자 C에게 맡겨두고 있거나 또는 팔아서 넘겨줘 버린 경우

(나) 매도인 (A)이 매수인 (B)에게 X 부동산에 대한 등기이전을 통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준 상태

- 매수인 B가 제186조에 따라 등기에 의한 소유권 취득에 따라 매도인 A 외에 모든 자에게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절대적 권리, 배타적 권리)
- A 소유의 상태에서 제3자 C가 토지인 X 부동산 위에 무단으로 가건물을 짓고 살고 있는 경우

(다) 매매외에 용익적 권리와 채권담보적 권리의 채권적 효력과 물권적 효력의 차이

(a) 용익적 권리의 채권적 효력과 물권적 효력의 차이

- A가 자신의 토지 X를 B에게 빌려주는 계약관계
- A와 B 사이에 임대차계약 (제618조)을 체결한 경우
 - 계약에 따른 A와 B 사이의 상대적인 토지 용익적 권리의 발생
 - A가 위 계약 체결 후에 X 토지를 C에게 매각하여 등기를 넘겨준 경우 (제3자에 대한 효력 : 채권의 상대적 효력)
- A와 B 사이에 전세권계약 (제303조)을 체결한 경우
 - 전세권계약과 등기에 따른 B의 전세권에 대한 물권적 지위 (절대적 지위)
 - A가 위 계약 체결 후에 X 토지를 C에게 매각하여 등기를 넘겨준 경우 (제3자에 대한 효력 인정 : 물권의 절대적, 배타적 효력)

cf. 채권의 제3자에 대한 주장(대항력)의 인정 필요 : 주택, 상가임차권

(b) 채권의 만족을 위한 담보적 권리의 확보

- A가 B에게 금전을 빌려주는 경우 B에 대한 금전반환의 채권을 확보할 필요
- 채무자 B가 재산이 부족하여 파산한 경우 채권자가 A 외에 여러 사람
 - 채권의 평등성에 따라 B의 남겨진 파산재산을 채권액에 비례하여 만족받음
- 채무자 B에게 금전을 대여할 당시에 A가 B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특정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해 두면서 그 재산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만족을 받을 지위를 부여해 두는 제도 (담보물권)
 - 저당권 (민법 제356조, 질권의 경우 경매청구권 제338조)

(라) 채권과 물권의 개념적 구별 (정리)

o 객체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 ↔ 상대방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청구

cf.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구체적 표현

o 특정인이 특정인에 대하여 계약 등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vs. 어떤 자가 특정한 물건에 대하여 사용, 수익, 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 (물권의 여러 내용 : 전면적인 소유권 / 용익할 수 있는 용익물권 / 처분할 수 있는 담보물권)

o 채권의 실현을 위해 물권이 봉사하는 경우 및 채권의 물권유사적 지위 강화

5. 물권의 배타적 지배에 따른 제도의 요청 (위 1. 내용의 개관)

(가) 물권의 귀속관계 등에 관한 외부적 공시

공시의 수단 : 등기 및 인도

공시요청에 따른 필요성 : 물권의 종류와 내용에 관한 법정 주의

공시요청의 실현방법

(나) 소유권이전을 위한 별도의 행위에 관한 필요성 여부 (논란의 대상)

원인행위인 매매계약의 유효함의 전제

별도로 소유권이전을 위한 무언인가의 조치 필요 여부

ex. 매매계약 체결 후 매수인이 매도인의 서류 등을 위조해 자기 명의로 이전받고 처분한 경우 / 소유권을 처분하는 자의 처분권한 전제 여부

(6) 매매계약과 소유권이전을 위한 행위 사이의 관계 (아래 6. 참고)

유인관계와 무인관계 및 반환청구권의 근거

6. 유인행위와 무인행위

법률행위의 효력이 그 전제가 된 원인의 존부 및 효력 여부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유인행위'라고 하며, 그 원인의 존부 및 효력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인행위'라고 한다. 유인성 여부에 관한 대표적 사례로는 채권행위 (매매계약)를 통해 의무(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전)를 부담하고 그 이행으로서 해당 (준)물권의 변동을 초래하는 (준)물권행위를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만약 소유권이전이 무인행위라고 규율된다면,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은 매매계약이 그 법적 원인을 이루나, 매매계약이 효력이 없어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이 법적 원인이 없게 되더라도 소유권이전은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 경우 출연자와 출연수령자

의 관계에서 출연의 법적 원인이 없기 때문에 출연자는 그의 급부를 부당이득으로서 수령자로부터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율하게 된다. 반면, 유인행위에서는 출연을 정당화하는 법적 원인으로부터 출연의 법적 규율이 분리되어 추상화되지 않는다. 오히려 출연의 법적 원인의 존재가 유인적 출연의 유효성에 속한다.

III. 민법의 기본이념

1. 民法의 基本原理로서 私的自治의 原則

근대 민법은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한 사회경제체제를 법적으로 체계화한 내용으로서, 사회구성원인 시민이 각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서 스스로의 생활 관계를 형성·변경·소멸할 수 있다는 ‘사적자치의 원칙’을 그 핵심으로 한다. 사적자치의 원칙은 여러 가지의 파생원리로 나타나는데, 계약자유(법률행위자유)의 원칙, 소유권보장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자기책임의 원칙), 유언의 자유 등이 바로 그것이다.

2. 私的自治原則의 派生原理

(1) 契約自由의 原則

사적 생활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인 계약에 있어서 모든 개인은 자유를 누리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계약체결의 자유), 계약을 체결한다면 누구와 체결할 것인지(계약상대방 선택의 자유), 그리고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계약내용형성 및 방식의 자유)에 대한 자유를 가진다. 그러나 계약자유 원칙은 일정한 경계에서 제한될 수 있는데, 법률행위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제103조) 당사자의 공박·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경우(제104조)에 무효가 된다거나, ‘대물반환의 예약’에서 대물의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의 합산액을 넘는 부분을 무효(제607조, 제608조)로 보는 것은 법질서에 반하는 계약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해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에 해당한다. 민법 이외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자제한법」,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등과 같은 특별법을 통해서 계약의 자유가 제한되기도 한다.

(2) 所有權保障의 原則

모든 개인은 사적 소유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 대한 권리, 즉 소유권을 보장받음으로써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사적인 영역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 따라서 소유권을 가진 자는 그 소유물의 사용·수익·처분에 있어서 타인은 물론이고 국가에 의해서도 침해받

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소유권을 비롯한 사인의 재산권도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헌법 제23조).

(3) 過失責任의 原則

모든 개인은 자신에게 과실이 없이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와 같이 개인의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여 자유로운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원리로서 자신에게 과실이 없는 이상 불이익을 입지 않는다는 원리가 바로 과실책임의 원칙 또는 자기책임의 원칙이다. 특히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키는 채무불이행책임(제390조)과 불법행위책임(제750조)은 채무자나 가해자에게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